

# 전주서신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정 2020.06.18.

개정 2020.12.09.

2021.02.27.

**제1조(목적)** 학부모회는 전주서신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학부모회의 명칭은 ‘전주서신초등학교 학부모회’라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·지원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

**제4조(회원)**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(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)로 한다.

## 제5조(임원 등의 구성)

-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,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 를 둘 수 있다.
- ④ 차기년도 학부모회 회장, 부회장, 총무는 당해연도 학부모회에서 11~12월경에 선출한다.
- ⑤ 회장은 5, 6학년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되 후보자가 없을 경우, 임원의 동의하에 학부모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
- ⑥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.

## 제6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 차기년 3월 1일부터 다음 학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

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
-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학생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연임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회장까지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7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무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8조(학부모회의 조직)

-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학년·학급별 위원회,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.
- ③ 각 반 학급 대표는 자원하여 선출하되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교육활동 참여 경험자를 우선으로 결정한다.

### 제9조(총회)

-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2. 회원 1/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
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  - 2. 학부모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
  - 3. 학부모회 임원 선출
  - 4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
5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.

## 제11조(대의원회)

-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- ③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
## 제13조(기능별 학부모회)

-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
## 제14조(회계 등 회무처리)

- ①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.
- ② 학부모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, 지방재정법 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,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장에게 있다.
- ③ 학부모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④ 회장은 결산내역을 2월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15조(재정지원 등)

-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

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회계연도)**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### **제17조(해산)**

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·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·폐합일자로 해산한다.

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

**제18조(청산)**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### 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학부모총회의 소집)** 최초의 학부모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